

2020년도 4/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1. 2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□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□ 보고 대상

- 기 간 : 2020. 10. 1. ~ 12. 31.(2020년 4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시장 핫라인) 및 오프라인
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

□ 접수결과

- 2020년 4분기 총 145건 접수

[표 1] 2020년 4분기 창구별 접수현황 (단위 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10월	11월	12월
공직자비리신고	93	35	26	32
공 익 신 고	52	15	23	14
부 정 청 탁	-	0	0	0
퇴직공무원특혜	-	0	0	0
합 계	145	50	49	46

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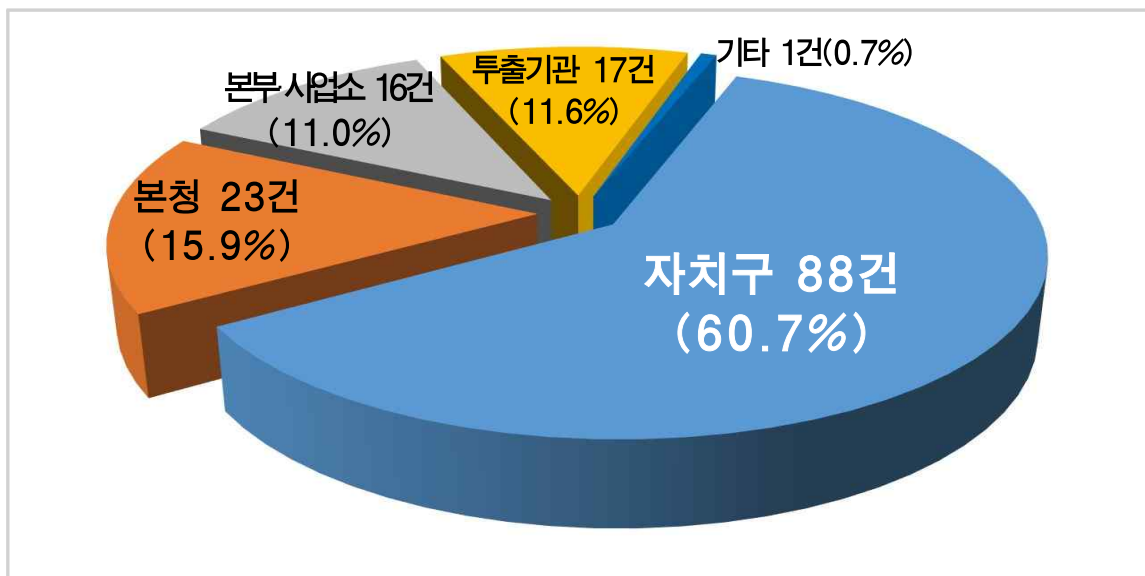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경로	합 계	온 라 인 홈페이지/모바일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	기 타 응답소/우편/방문/팩스
접수건수	145 (100%)	134 (92.4%)	5 (3.5%)	6 (4.1%)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88건(60.7%)으로 가장 많았음
 - 건축법,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시민 생활상의 공익신고 29건
 - 자치구 직원 복무 및 불친절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등 59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23건(15.9%), 본부/사업소 소관 16건(11%)
 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1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22건
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등 16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17건(11.6%), 기타 1건(0.7%)
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1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16건
 - 기타 1건은 시 소관사무가 아닌 건



3. 공익제보 분류

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145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12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 :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112건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145 (100%)	81 (55.9%)	31 (21.3%)	33 (22.8%)

* 청원/제안/건의/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※ 조례상 '공익제보' 해당 신고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67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업무수행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, 업무숙지의 의무,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,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

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□ 공익제보 해당 112건 세부내역

○ 부패신고 해당 81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부 정 청 탁	자 치 구	1	업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의심
	투자출연기관	1	
	소 계	2	
업 무 부 적 정	본 청	14	업무 추진 과정 중 고의 또는 미숙/부주의 행위 관련 (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)
	본부·사업소	11	
	자 치 구	28	
	투자출연기관	13	
	기 타	1	
	소 계	67	
불 공 정 행 위	본 청	1	입찰이나 채용,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
	자 치 구	2	
	소 계	3	
복 무	본 청	2	초과근무/출장 부정행위, 직무 태만, 불친절, 품위유지 위반 등 행동강령 관련
	본부·사업소	4	
	자 치 구	3	
	소 계	9	
총 계		81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○ 공익신고 해당 31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 분	건수	소관기관	조치 상황	내 용
감염병예방법	5	자치구	개선3, 해당없음1, 취하1	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등
건축법	8	자치구	개선7, 해당없음1	불법건축물 신고 등
	1	투자출연	해당없음1	위법한 건축공사 원상복구
공동주택관리법	1	자치구	중복1	입주자대표회의의 규정위반
대기환경보전법	1	자치구	개선1	매연차량 신고
도로교통법	4	자치구	개선4	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등
도시계획법	1	자치구	진행중1	종교부지의 공원 편입은 부당함
도시정비법	2	자치구	진행중2	재건축사업 관련 비리 신고 등
상표법	1	자치구	진행중1	위조품 판매 신고
소방기본법	1	자치구	개선1	옥상대피로 폐쇄 신고
옥외광고물법	1	자치구	개선1	불법광고물 단속요청
의료법	1	자치구	해당없음1	의약품 재사용 의혹 등
저작권법	1	본청	개선1	사진 무단도용 신고
주차장법	1	자치구	시정명령1	주차장 불법 용도변경
주택법	1	자치구	해당없음1	조망권 및 재산권 침해
화물자동차법	1	자치구	해당없음1	영업용화물차량 등록신고
총 계	31		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1.2.8. 현재)

□ 처리 내역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총계	처분 및 개선 40		종결 74			진행중	취하
	처분(조치)	개선 등	해당없음	권한없음	중복		
145	10	30	54	6	14	23	8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□ 처분(조치) 내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: 건)

번호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부 패	품위위반 및 초근출장 수당 부당수령	감 사 위 원 회	증정계요구1, 환수(1,755,090원)
2	부 패	경품 행사 당첨자 부당수령	감 사 위 원 회	훈계1, 통보1
3	부 패	구매 수의계약 적정성 감사요청	감 사 위 원 회	주의요구1, 통보1
4	부 패	위탁시설 직원 부적정 채용	감 사 위 원 회	문책요구3
5	부 패	공유시설 입주자의 계약위반	본 청	퇴거조치
6	부 패	소방공무원 복무 해이	사 업 소	감봉1
7	부 패	업무용 휴대폰 사적 사용	사 업 소	견책1
8	부 패	사회복지시설 급여 부정수급	자 치 구	시정명령
9	부 패	구 체육센터 강사의 사례비 수령	자 치 구	계약해지
10	공 익	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등	자 치 구	자진정비지시(사전처분통지) 및 건축물 시정명령